

2011. 1.

수 신 : 제천시의회의장

제 목 : 제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발의

위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78회  
제천시의회 임시회에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.

붙 임 1. 발의의원 서명서 1부.

2. 제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1부.

발의자 : 오선균 의원 (서명또는 날인) 

의 2인

제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 
의안발의서명서

의원성명	서명 또는 날인	비고
오선희	오선희	
전철성	전철성	
김호경	김호경	

## 제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번호	1487
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1. 1. 10.  
발 의 자 : 오선균의원외 2인

### 1. 제안이유

2010년 12월 2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내용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규칙안 개정권고와 표준안이 통보되었기 지방자치법 제43조의 근거에 의해 규칙으로 새로이 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제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심의위원회 조례를 폐지

붙임 1. 제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1부.

## 제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

제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심의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